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121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차종선, 우승원, 진현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채규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진웅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4. 27. 접수 제118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해 설치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고, D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농림수산업자, C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이다.

나. 원고는 2018.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소외 회사의 채무이행 지체로 보증채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대위변제금, 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과태료 및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C는 그 무렵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대출은행	보증금액	손해금,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보증일자	보증기간
E조합	85,000,000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함	2018. 3. 30.	2021. 3.

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위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연체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는 2021. 2. 1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출은행에 90,117,4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차전197호로 구상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1. 3. 3.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지급명령은 2021. 3. 23. 확정되었다.

마. C는 2020. 4.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4. 27. 접수 제1186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각 표와 같다.

[적극재산]

번호	소재지	종류	수량	단가	금액(원)
1	서울시 동대문구 F외 1필지	연립주택	72	-	394,000,000
2	정읍시 G (별지 목록 제1항)	답	2,017	19,000	38,323,000
3	정읍시 H (별지 목록 제2항)	전	2,048	19,600	40,140,800
합계					472,463,800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금액
1	중소기업은행	32,265,497
2	I	37,486,575
3	정읍세무서	140,230
4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 J)	360,000,000

5	동대문구청	245,450
6	원고	90,117,485
합계		539,663,66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 및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대출을 받았다. C는 이 사건 증여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 가압류 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2021. 2. 16.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여 실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②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적극재산은 가액이 합계 472,463,800원, 소극재산은 가액이

539,663,668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C가 그런 상태에서 적극재산 중 약 16%(가액 합계 78,463,800원)에 이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성이 인정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③ 피고는 당시 배우자인 C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향후 사망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하나, 그 목적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상당성,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항변) 및 판단

피고는 당시 배우자인 C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향후 사망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뿐이고 그 후 C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C가 사기 피해를 당하는 바람에 피고와 불화, 갈등하게 되면서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C의 관계, 따라서 피고가 C의 채무초과상태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의 동기와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별지